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
----------	-----

제출연월일 : 2005.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궐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보궐선출이 이루어지는 바, 선출 시기가 동계휴가기간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으로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함** (안 제3조)

나.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6월미만 남은 경우**로 함(안 제3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신·구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입법예고 결과 : 제시된 의견 없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결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를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잔여임기가 3월미만”을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 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